

공유재산 관리계획(취득) 승인안

■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
-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■ 주요골자

- 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함으로
-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~3개소 (100평 이상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,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.

■ 검토보고
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 분석하도록 하였음.
-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의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 ~ 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,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.
- 그러나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안에 의한 매입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과 적정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안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.